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22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이동훈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이은

변론 종결2024. 8. 8.

판결 선고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523,443원을 및 그 중 32,797,92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541,9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4. 3.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1,183,609원은 이 사건 2024. 8.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C 대 242.8m²(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대지')는 2008. 9.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D의 상속인인 원고, 피고, E에게 각 1/3 지분 비율로 2008. 11. 2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10. 5. 26. E, 원고의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가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피고의 아버지인 F은 이천시 G 대 146.8m²(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대지'), 이 사건 원·피고 소유 각 대지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1번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을 2009. 12. 7. 장남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H에게 각 1/2 지분 비율로 증여하였다. 별지1 목록 기재 2번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은 2008. 11. 25. 원고, 피고, E이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0. 5. 26. E, 원고의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가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18. '이 사건 원고 소유 대지와 이 사건 원고 건물이 이 사건 피고 소유 대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의 사용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사용료의 지급은 피고에 한하며 상속 또는 타에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 합의각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원고, 피고 사이의 합의서 내지 각서는 전부 무효로 하고, 본 합의각서만이 유일하고 유효한 합의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 이 사건 합의각서의 100만 원 부분은 삭선이 그어져 있고 '80만 원'으로 가필이 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각서의 형상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의 각 기재, 을 1, 18-1의 각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원고 건물과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수도 배관을 공유하고 있어 피고가 사용하는 수도요금도 원고에게 청구되고 있다. 이 사건 합의각서는 위조된 것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액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신 납부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수도요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통해 수도요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정산하였고, 2018년경부터 수도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원고의 요구로 토지사용료를 20만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별도의 수도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합의각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참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항변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5977, 2019다275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1, 2, 12, 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각서의 원고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합의각서 전체는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전날인 2012. 5. 17. 13:10 원고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위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첨부된 원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 이 사건 합의각서에 날인된 원고 이름 옆의 인영(아래 왼쪽)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첨부된 원고 인감증명서의 인영(아래 오른쪽)과 유사하다.

DOCUMENT: 원고 인영 비교(이미지 생략)

- 이 사건 합의각서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일에 발급되었고, 피고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이 사건 합의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하다.
- 원·피고의 아버지인 F은 이 사건 합의각서가 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이후 2013. 1. 3.부터 2018. 10. 1.까지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18. 10. 31.부터 2021. 7. 2.까지는 매월 8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8. 10.경부터는 수도세 등 정산 문제로 8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약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토지사용료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수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의 사용료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8. 10. 31.부터는 8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6.분까지 토지사용료를 모두 지급해 오면서도 별도의 수도요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18. 10.경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상가가 늘어나면서 수도요금이 증액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의 사용료 감액시기 및 감액범위에 대한 피고 주장과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통해 수도요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정산하였고, 2018년경부터 수도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원고의 요구로 토지 사용료를 20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토지사용료에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위한 수도요금의 정산 부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유현영

별지